ready car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MERITZ
메리츠화재

내 가족을 위한
행복 드라이브의 시작!

고객과 함께 백년해로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KMAC
경제의 전당 한역

A-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A.M.BEST
신용등급 7년 연속

www.meritzfire.com

제작일 : 2017. 6. 1 / 개정일 : 2017. 6. 1

Ready Meritz! Merry Meritz!

고객콜센터
1566-7711

사고접수센터
1566-4982

MERITZ 메리츠화재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 제공한 경우 이용 ·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 주소 ·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신용평가정보(주)
  – 전화 : 02–2122–4000, 홈페이지 : http://www.nice.co.kr
- SCI평가정보(주)
  – 전화 : 02–3445–5000, 홈페이지 : http://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전화 : 02–708–6000, 홈페이지 : http://www.kcb4u.com

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보험거래종료 후 5년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거래종료일은 1)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 · 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3)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고객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담당자 : 02–3786–2551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금융민원센터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메리츠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

메리츠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 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Ⅰ.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직업 ·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마. 그 밖에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 · 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Ⅱ. 고객정보의 제공처

메리츠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회사, 메리츠화재,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금융서비스,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 ·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정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사항은 제외)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

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 · 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⑧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 · 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 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 3. 31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화재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종금증권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금융서비스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 1
주요내용 요약서 ····· 3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 6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가이드 ····· 7
계약 후 회사에 알릴 사항 ····· 8
Q&A ····· 8
자동차보험 주요 민원 사례 ····· 9
자동차보험 주요 분쟁 사례 ····· 10
보험 용어 해설 ····· 11
약관 인용 법령 요약 ····· 13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21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24
제1장 배상책임 ····· 24
제1절 대인배상 I ····· 24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 24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25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26
제1절 자기신체사고 ····· 26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28
제3절 자기차량손해 ····· 29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32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32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34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35
제4편 일반사항 ····· 37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37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38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39
제4장 그 밖의 사항 ····· 43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45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54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56
<별표 4> 과실상계 등 ····· 57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58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58
[붙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 59

[붙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69

특별약관

1.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77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7
1-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7
1-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78
1-4)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9
1-5) 임시운전자 특별약관II••80
1-6)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80
1-7) ~ 1-15) 운전자연령 만21·22·24·26·28·30·35·43·48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81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82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82
2-2)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83
2-3)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85
2-4)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86
2-5)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90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90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90
3-2) 주말·휴일확대담보 특별약관•••••••••••••••••••••••••••••••••••••92
3-3) 대중교통사고담보 특별약관•••••••••••••••••••••••••••••••••••••• 92
3-4) 해외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93
3-5) 간병비지원금 특별약관••94
3-6) 성형 및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94
3-7) 휴직손해담보 특별약관••95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95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95
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97

5.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 특별약관•••••••••••••••••••••••••••••••••••• 98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98
5-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9
5-3) (Auto Lease)중도 상환 수수료 보상 특별약관•••••••••••••••••••••99
5-4)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100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100

5-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102
5-7)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 102
5-8) Eco-Green 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 103
5-9)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 104
5-10)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05
6.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 106
6-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06
6-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107
6-3)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 107
6-4) 보험계약 2회 자동갱신 특별약관 ····· 108
6-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09
6-6) 보험료 정산약정에 대한 특별약관 ····· 110
6-7) E-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 ····· 110
6-8) 행복 나눔 특별약관I ····· 111
6-9)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113

7. 기타 특별약관 ····· 114
7-1)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114
7-2)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19
7-3)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 119
7-4) 자동차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19
7-5)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I 특별약관 ····· 120
7-6)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II 특별약관 ····· 124
7-7) 주행거리 연동 할인 I 특별약관 ····· 127
7-8) 주행거리 연동 할인 II 특별약관 ····· 130
7-9) 지정대리 청구 특별약관 ····· 132
7-10) 블랙박스 장치 특별약관 ····· 133
7-11) 자녀(만7세이하) 할인 특별약관 ····· 135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1. 계약자 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발생 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운전자연령한정/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위반

– 운전자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가입하신 연령특약의 해당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발생한 사고만 보상합니다. 또한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사고발생시 가입하신 운전자한정특약의 해당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합니다.

※ 해당연령은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1.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고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음주운전은 사고당 대인배상 Ⅰ · Ⅱ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무면허운전은 사고당 대인배상 Ⅰ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의 분담

–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3. 보험회사의 대위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3. 보험기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4.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전 알릴 의무

- ㅇ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및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ㅇ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 ㅇ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

을 승인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한 사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2)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제외하고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5. 보험금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으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

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ㅇ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6.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ㅇ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주요보장내용(보통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보험

*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I

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규정된 한도로 보상

최고보상한도 : 1억 5천만원 - 부상 : 최고 3천만원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2천만원)을 한도로보상

대인배상II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대인배상I을 넘는 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자기차량손해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추가적인 선택 보장내용(특별약관)을 추천해드립니다.

① 주행거리 연동 할인 | 특별약관

이젠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받으세요!

고객니즈에 맞는 할인제도 운영

보험가입 종료 후, 보험기간 동안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 환급

할인구간

3천	5천	1만	1만2천	1만7천	2만
3천km 이하	5천km 이하	1만km 이하	1만2천km 이하	1만7천km 이하	2만km 이하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보험가입 및 만기시 간편한 사진전송

1. MMS : 메리츠화재 #문자발송 → 계기판사진촬영/첨부 후 #번호로 전송
2. 메리츠화재 공식앱 : App. 다운/설치 → App실행 → 계기판촬영 → 주행거리사진등록 → 전송

*사진전송 가능기간 : 보험시기/보험만기 2개월전 ~ 1개월후

②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II

가정피보험자가 자정하는 날로부터 선택한 기간
(1일 이상, 연간 60일 한도. 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까지 보장)

③ E-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1500원의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④ 제주렌터카 특별약관

제주지역 및 부속도서(바다는 제외)에서 렌터카 사용/관리 중 발생한 차량손해 사고
(현재 가입중인 차보험에서 자차담보 가입한 경우 특약 가입가능)

⑤ 해외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해외에서 운전 중 생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
(현재 가입중인 차보험에서 자손(자상) 담보를 가입한 경우 특약 가입가능)

2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가이드

사고현장 사고처리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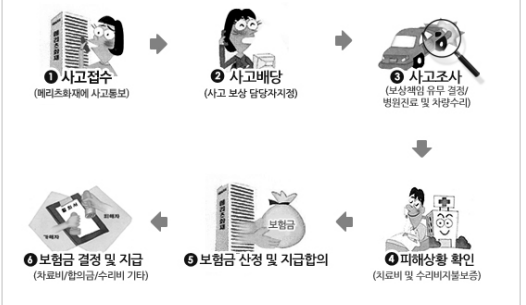

- **피해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이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보험회사에 위임) 일정금액을 주고 현장합의를 한 경우는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접수 시 고객이 회사에 알려야 할 내용**

  보험가입자, 성명, 주소, 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피해상황, 경찰서 신고여부 및 입원병원 수리공장 등

3 계약 후 회사에 알릴사항

4 Q&A

레디카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Q. 특별약관 중 레디카 긴급출동 서비스의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메리츠화재 고객지원센터(1566-7711)로 접수 후 이용 가능합니다.

Q. 해당횟수를 사용 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해당횟수 사용 후 특약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Q.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긴급출동 서비스 요청지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역인 경우
- 통상적인 방법으로 감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 LPG 차량인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 제공 불가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비례형 제도 관련

Q. 자기차량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 출고 시점까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자가 발급하는 점검 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 출고시점까지 과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적용한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 등으로 자기부담금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20%를 공제한 후 과실 확정시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예시 **자기부담금 비율20%(최소 30만원~최고 100만원)선택한 차량수리비가 50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500만원×20%=100만원,
100만원이 30~100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은 100만원

자동차보험 주요 **민원** 사례

구 분	주요민원사례	유의 사항
보험료 변동	사고발생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자동차보험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본인에게 사고가 없을지라도, 본인이 속한 계층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나 큰 규모의 사고가 난 경우 부득이하게 본인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계층은 기명피보험자 연령, 차종, 차량특성, 연령특약, 운전자특약 등 다수 요율요소에 의하여 구분됩니다.
보험료 변동	최근 1년간 사고는 1건(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사고가 3건이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큰 폭 할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고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가입자의 손해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사고건수에 따른 손해 경향을 판단하기에 다소 짧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3년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 할인을, 사고가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되므로, 고객께서는 사고처리 및 보험 갱신시 해당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제한	사고가 있다는 이유로 자사 인수는 어려우므로 타사 연계 자동차보험(공동물건)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부당	당사는 사고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동차보험 인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고객의 경우, 향후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공동물건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 공동물건으로 가입하시기전, 타사 인수 가능 여부 또는 포스팅 제도 이용을 통하여 공동물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실 수도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제도 : 특정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공동물건보다 낮은 보험료로 해당 계약을 인수할 다른 보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개입찰 방식의 자동차보험 인수제도

자동차보험 주요 **분쟁** 사례

1. 보험회사 설명 의무 관련

▶ **사례 1 :** 연령한정 특약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분쟁조정결과 :** 연령특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구체적 직접적 방법으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청약서 날인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
('06.8.22. 조정번호 2006-52호)

▶ **사례 2 :** 가족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뒤, 기명피보험자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분쟁조정결과 :** 운전자한정특약 가입시 고객이 고지한 운전자 사항이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보장대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명시・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13.10.29. 조정번호 2013-30호)

유의사항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에 운전 가능한 범위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큰 손실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운전자한정 및 연령한정 특약 가입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청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2. 계약자 알릴 의무 관련

▶ **사례 3 :** 주소 변경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 수령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분쟁조정결과 :** 주소 변경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공통적이므로 보험회사가 별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며,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납입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고객의 장기부재로 인하여 납입최고/해지통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타당
('03.3.25. 조정번호 2013-10호)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자동차 관련 사항, 연락처, 주소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가입회사로 알려주세요.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분쟁 사례의 경우 예시사항이며, 고객님이 가입한 계약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분쟁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용어 해설

1. 보험 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동차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5. 피보험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보험금 청구권자

6. 보험료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1) 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

2) 부가보험료 : 수수료, 인건비, 기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

7. 보험금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 사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

10. 면책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나, 특정의 사안은 예외로 하여 그 의무를 면함

11.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12. 공제계약

일정한 지역이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상호부금을 갹출해 두었다가 조합원 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급을 지급하는 제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이 있음.

약관 인용 법령 요약

다음은 보통약관에서 인용된 주요 법령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약관 및 법령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 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MERITZ 메리츠화재

ready

Readycar개인용 자동차보험

2017-6-1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 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21
제1조 용어의 정의 ····· 21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 2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24

제1장 배상책임 ····· 24

제1절 대인배상 I ····· 24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24
제4조 피보험자 ····· 24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24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 24
제6조 보상하는 손해 ····· 24
제7조 피보험자 ····· 24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24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25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 25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25
제11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 26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26

제1절 자기신체사고 ····· 26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 26
제13조 피보험자 ····· 27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27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27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27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28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 28
제18조 피보험자 ····· 28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28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29

제3절 자기차량손해 ····· 29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 29
제22조 피보험자 ····· 30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30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31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32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32

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32
제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32
제27조 제출 서류 ····· 33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 33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34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34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34
제31조 제출 서류 ····· 34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 35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35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 35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 35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36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 36
제37조 공탁금의 대출 ····· 36

제4편 일반사항 ····· 37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37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 37
제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7
제40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37
제41조 청약 철회 ····· 38
제42조 보험기간 ····· 38
제43조 사고발생지역 ····· 38

제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38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39
제46조 사고발생 시 의무 ····· 39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39

제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39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40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40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 41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41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41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42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 43

제4장 그 밖의 사항····· 43

제55조 약관의 해석 ····· 43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43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44
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44
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 44
제60조 분쟁의 조정 ····· 44
제61조 관할법원 ····· 44
제62조 준용규정 ····· 44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45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54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56
<별표 4> 과실상계 등····· 57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58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58
[붙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59
[붙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69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 (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

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물체 :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18. 침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19. 과실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0. 중대한 과실 :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현저히 결여한 때를 말합니다.
21. 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나.「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상해(*1)를 입은 경우에 보상
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1)를 입은 경우에 보상
다.「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이륜자동차 미적용)

※ 이륜자동차보험의 경우 법규위반경력요율 및 사고건별 특성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합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대인배상 I」,「대인배상II」,「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대인배상II」,「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2-1-3 2-2-1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대인배상I」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피보험자동차 단독사고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② 제1항의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및「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⑤ 다만, 제4항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피보험자동차 단독사고 등)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1)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5. 배상의무자(*1)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2)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1.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3)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제22조(피보험자)「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

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②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④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2)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2)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⑦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2)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1)로 인하여 상해(*2)를 입은 때
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2)를 입은 때
4.「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1)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2)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

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	◦	◦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

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

된 자동차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해제>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향해 계약효력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이며, 해제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별도 의사표시 없이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상실 수익액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5.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로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6. 기준경비율 :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 7. 단순경비율 : 매출 대비 경비를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 수입액에 곱하는 적용률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상실 수익액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3. 상실 수익액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용어풀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3. 상실 수익액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frac{1}{1+i} + \frac{1}{(1+i)^2} + \cdots\cdots + \frac{1}{(1+i)^n}$$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1.적극손해</td><td>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td></tr>
<tr><td>2.위자료</td><td>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table>
<tr><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r><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able>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td></tr>
<tr><td>3.휴업손해</td><td>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td></tr>
</table>

	〈산식〉 $1일\ 수입감소액 \times 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0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65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

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 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총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총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

	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의 (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8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5,30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4,700만원
5급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3,30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2,700만원
7급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7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1,2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470만원	93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800만원
11급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30만원	67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13급	40만원	50만원	80만원	130만원	270만원
14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5백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2백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 역	내 용

공통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상·하지	공통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상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하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천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백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천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천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천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천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천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 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

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1.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 82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82
1-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82
1-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82
1-4)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83
1-5)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II ····· 85
1-6)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85
1-7 ~ 1-15) 운전자연령 만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86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 87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87
2-2)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 88
2-3)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 90
2-4)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 91
2-5)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 93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 93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93
3-2) 주말·휴일확대담보 특별약관 ····· 95
3-3) 대중교통사고담보 특별약관 ····· 96
3-4) 해외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 97
3-5) 간병비지원금 특별약관 ····· 97
3-6) 성형 및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 98
3-7) 휴직손해담보 특별약관 ····· 98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 99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99
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 100

5.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 특별약관 ····· 102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 102
5-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103
5-3) (Auto Lease)중도 상환 수수료 보상 특별약관 · 103
5-4)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 104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 104
5-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106
5-7)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 106
5-8) Eco-Green 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 106
5-9)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 108
5-10)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09

6.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 110

6-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10
6-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111
6-3)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 111
6-4) 보험계약 2회 자동갱신 특별약관 ····· 112
6-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13
6-6) 보험료 정산약정에 대한 특별약관 · ····· 114
6-7) E-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 ····· 114
6-8) 행복 나눔 특별약관I ····· 115
6-9)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117

7. 기타 특별약관 ····· 118

7-1)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118
7-2)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23
7-3)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 123
7-4) 자동차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23
7-5)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I 특별약관 ····· 124
7-6)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II 특별약관 ····· 128
7-7) 주행거리 연동 할인 I 특별약관 ····· 131
7-8) 주행거리 연동 할인 II 특별약관 ····· 134
7-9) 지정대리 청구 특별약관 ····· 137
7-10) 블랙박스 장치 특별약관 ····· 138
7-11) 자녀(만7세이하) 할인 특별약관 ····· 139

1.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 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 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 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지정 1인 운전자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이하 '지정운전자'라 하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제외함) 으로 한정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2.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운전자 이외의 자'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4)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이 특별약관에서 **형제·자매**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과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 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임시운전자 특별약관Ⅱ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임시운전 책임기간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임시운전 책임기간(임의기간)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하는 기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남)을 「임의기간」이라 하여 임시운전 책임기간으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②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2) 회사가 보상할 '(1)'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가족(「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가족'을 말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임시적 대리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
③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 1-15) 운전자연령 만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위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을 죽게 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7호와 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따라 피해자 1인당 다음과 같은 한도(사망일 경우, 사망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보험금 지급한도
사망	사망 가입금액
1급	사망 가입금액의 50%
2~3급	사망 가입금액의 20%
4~7급	사망 가입금액의 10%

<용어풀이>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1) 신호위반, 지시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추월방법위반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사고
   (8) 주취/약물복용사고
   (9) 인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4.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관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③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만, 위 '1.보상하는 손해의 (3)'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1)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2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를 포함. 이하 '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원의 판결문 사본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1)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

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비용 등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②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공소제기와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449조 규정에 의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말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원의 판결문 사본
④ 변호사보수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1)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6.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 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1. 위 '(1)'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1)'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및「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 보상액	−	실제 손해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실제손해액**이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주말·휴일확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을 「주말·휴일사고추가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 및 휴일**이라 함은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① 주말 :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②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전일 18:00 ~ 익일 06:00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3) 대중교통사고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승용구에 탑승중(운전 중 제외)인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탑승중 교통사고'라 함)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승용구라 함은 다음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③ 여객수송용 기차, 전철(지하철)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망한 때
②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자살 또는 싸움으로 사망한 때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④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⑤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⑥ 경기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 흥행 또는 흥행을 위한 연습, 훈련, 또는 시운전을 위하여 운행중인 교통승용구를 조정하거나 탑승중 사망한 때
⑦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때
⑧ 하역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때
⑨ 교통승용구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던 중 사망한 때
⑩ 교통승용구에 탑승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교통승용구에 탑승 하던 중 사망한 때
(2)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④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3)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4) 해외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밖에서 정원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운전 중 생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5) 간병비지원금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어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병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등급	1급내지 3급	4급내지 6급
인정금액	500만원	200만원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3. 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6) 성형 및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상해(*1)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에 1천만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을 「성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보철을 요하는 경우에는 1대당 10만원의 「치아보철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7) 휴직손해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휴직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휴직손해 보험금 : 입원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 입원 1일당 3만원을 100일한도로 하여 매 사고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일로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특별약관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이하 같음) 생긴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1)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1)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2·3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다른 자동차

피보험자 소유 차량	운전가능 다른 차량
승용차	승용/다인승/경승합/경화물/4종화물
다인승	승용/다인승/경승합/3종승합/경화물/4종화물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어야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또

는「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이하 같음.)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또는「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동차의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2·3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교체 자동차

* 다른 자동차

피보험자 소유 차량	운전가능 다른 차량
승용차	승용/다인승/경승합/경화물/4종화물
다인승	승용/다인승/경승합/3종승합/경화물/4종화물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어야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5.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비용'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2)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

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3)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및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다인승 1·2·3종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 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5-3) (Auto Lease)중도 상환 수수료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3년 이상 리스계약을 한 차량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출고당시의 신차가격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된 지 2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중도 상환 수수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발생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4)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량운반비용」은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수리비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 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을 보상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체교통 비용은 대체교통비용 인정기준액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대체교통비용 인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1만원, 2만원, 3만원인 경우 : 각각의 1일 보험금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렌트비용인 경우
가) 회사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전액
나)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여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의 8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3만원

(3)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자동차의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한도
③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4)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라 함은 보험회사와 대여자동차 전문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동급의 차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대여자동차 자기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을 가입하여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의 '3. 보험금의 지급 (2)의 ② 보험 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렌트비용인 경우'에 의하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대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운전한 대여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액을 한도로 대여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대여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할 '(1)'의 손해에 대하여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대여자동차의 보험계약 또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이라 함은 신차 취득시 소요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한 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자기차량손해」또는「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7)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출고당시 신차(최초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차량)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출고된 지 1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손해(간접손해 제외)가 보험가입금액(가입 당시 차량가액)의 70%이상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8) Eco-Green 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제

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제4항 제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①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그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위 '①'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리싸이클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및 전·후방 센서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대물배상」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1)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② 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2) ②'의 경우「대물배상」대상차량의 소유자

5. 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 또는 제22조(피보험자) 또는「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3.피보험자'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대물배상」또는「자기차량손해」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리싸이클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6. 적용배제

보험개발원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9)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및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대여한 대여자동차를 제주지역 내에서 사용·관리 중 사고를 일으켜 대여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여자동차의 파손으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및 '4. 휴차료'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여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3. 보험기간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하는 날부터 선택한 기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남)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일이 지정일의 첫날인 경우 제주도에 도착하여 대여자동차를 인수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

<용어풀이>
(1) **대여자동차**란 피보험자가 단기간(1개월 미만)의 이용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대여한 10인승이하의 승용차를 말합니다.
(2) 제주지역이란 행정구역상의 제주도 및 부속도서(해상은 제외)를 말합니다.

4.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는 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비용'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대여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를 말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10)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수리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위 '(3)'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5)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6-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함.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

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3)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함)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1)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3.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2)'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 만료일전까지 보험계약자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3) 회사가 약관,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라 함)을 개정한 경우,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3.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1)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 만료일부터 30일(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함)안에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부터 소급하여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1)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4) 보험계약 2회 자동갱신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2년간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함)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1)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3.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2)'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 만료일전까지 보험계약자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3) 회사가 약관,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라 함)을 개정한 경우,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3.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1)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 만료일부터 30일(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함)안에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부터 소급하여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1)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3)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갱신계약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이 계약 만료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5)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 약정이체일에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4회 보험료	5회 보험료	6회 보험료	7회 보험료	8회 보험료	9회 보험료	10회 보험료	11회 보험료
비연속 2회납	1형					1개월					
	2형			1개월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10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1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6-6) 보험료 정산약정에 대한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계약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정산
(1)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분할보험료를 포함)와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산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3. 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7) E-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자료를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자료**라 함은 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료를 수

령받을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위 '(1)'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위 '(1)' 또는 '(2)'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료의 교부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료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8) 행복 나눔 특별약관 I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이 아닐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①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30세 이상
②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1대)
③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
④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⑤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④'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의 경우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①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1대)
②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
③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2. 가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조건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1. 가입조건 (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⑤ 기명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⑥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⑦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1. 가입조건 (3)'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⑤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⑥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⑧ 다만,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2년마다 제출 할 수 있습니다.
⑨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1. 가입조건 (4)'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⑤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⑥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116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6-9)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이 특별약관 가입당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3) 기명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인지지각 검사에 경계선(42점)군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65세 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약 가입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2. 가입가능 기간
피보험자의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육필증에 기재된 인지지각검사 결과일로부터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이 2년 이내인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가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약관 '제1조 (3)'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기간 동안 해당 보험료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5. 보험기간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개시시기
교육필증상 인지지각검사 결과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부터. 단,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해있지 않은 경우,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변경한 첫날부터.
교육필증상 인지지각검사 결과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인지지각검사일부터. 단, 평가일 당일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해있지 않은 경우, 평가일 이후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변경한 첫날부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합니다. 단 보험기간 도중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외의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효력이 발생한날의 전날 24시에 종료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기타 특별약관

7-1)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라 함)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10㎞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퓨즈교환, 전조등교환, 오일보충 등 현장조치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력운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치 할 수 있으며, 현장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

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합니다. 비상급유 서비스를 2회 초과 요청시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잔여 이용 가능 횟수를 한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급유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입하여 배달하여 드리며, 이 경우 연료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LPG(엘피지)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가 피보험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외제차 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나 사이드 에어백 등이 장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일부 차량의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①'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견인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동 약관 '(1) 긴급견인서비스 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배터리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5) 타이어교체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휠 개조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1)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긴급구난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위 '①' 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외제차 또는 3,0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④ 세이프티로더 등 별도의 구난 장비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⑤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 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7) 타이어 펑크수리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펑크 1개 부위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펑크 1개 부위를 초과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다음과 같이 펑크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 긴급견인서비스' 또는 '(5)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가.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나.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다. 자연마모로 인한 펑크,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라.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④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검사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대행하여 드리며, 검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9) 폐차대행서비스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폐차전문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위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4) 배터리충전서비스, (5) 타이어교체서비스, (6) 긴급구난서비스, (8) 정기검사대행서비스, (9) 폐차대행서비스'는 1일 2회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 건		전계약 긴급출동 이용횟수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전계약이 있는 경우	0회	7회
		1회	6회
		2회이상	5회
	전계약이 없는 경우	-	5회
보험기간 3월초과 1년미만		-	3회
보험기간 3월이하		-	2회

(주)1. 전계약이라 함은 보험기간이 1년이며 이 보험계약 직전에 당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전계약이 있고 보험기간 1년인 경우의 이용가능횟수는 전계약의 Readycar 긴급출동 서비스 사용횟수에 의하여 산정되며 전계약 미사용횟수와 무관합니다.
3.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8) 정기검사대행서비스, (9) 폐차대행서비스'는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비상급유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위 이용가능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배터리충전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배터리충전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③ 잠금장치해제서비스 및 배터리충전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4) 배터리충전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1)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2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2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⑤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2)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4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4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⑥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3)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7-2)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적용 대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다인승 1·2·3종 승용자동차 및 구급용 승용자동차(앰뷸런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3)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해당 담보 및 해당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4) 자동차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그 취급업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통약관의 보상기준을 따름)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3-1)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위 '(1)'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4.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① 자동차취급업자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5)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I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별표2>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다) 보험기간이 3개월이상 남은 경우

(2)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나)'에서 정한 승용차요일제 비운행 약정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행거리 이하 운행 약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나)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 및 주행거리 정보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1)'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정산 환급 등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가)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3일 이하(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함)인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1>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1>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실적이 <별표2>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2>의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2>의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 위 (가)와 (나) 모두에 해당 될 경우 (가)와 (나) 각각의 정산금액 중 높은 금액 1가지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는 위 '(1)'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비운행 약정요일 운행 여부의 판단

(1)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내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다)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라)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내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8.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text{연간 주행거리} = \text{일평균 주행거리} \times \frac{365}{\text{(윤년일 경우 366)}} + \text{추가 운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경과주행거리 ÷ 경과일수

(1) '경과주행거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에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기록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2) '경과일수'는 최초 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일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단, 최초 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일이 보험시기 이전인 경우에는 보험시기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3) '추가운행거리'는 다음의 사유로 운행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1시간당 60km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합니다. 단, 1일 추가운행거리는 500km를 한도로 합니다.
(가)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
(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의 사유

9. 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약정요일 비운행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정산금액
비운행 약정요일 준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별표2>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정산금액
3,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3,000Km초과 ~ 5,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 1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0,000Km초과 ~ 12,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2,000Km초과 ~ 17,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 2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20,000Km초과	0%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6)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II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별표2>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다) 보험기간이 3개월이상 남은 경우
(2)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나)'에서 정한 승용차요일제 비운행 약정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행거리 이하 운행 약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나)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 및 주행거리 정보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1)'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5)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7)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지한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4)'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정산 등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정산율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정산율 1가지만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가)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함)인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위 '(1)'에 의해 추징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정산보험료를 추징합니다.

(3) 위 '(1)에 의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를 통하여 정산보험료를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정산보험료를 송금하여 드립니다.

(4) 이 특별약관 '2.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의무' '(1)'에서 규정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3)','(4)','(5)'에서 규정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다만, '3.의'(2)'에서 규정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아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전송하여 이 특별약관 약정사항의 준수를 증명한 경우 위 '(1)'에 의해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5) 이 특별약관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6)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7. 비운행 약정요일 운행 여부의 판단

(1)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4)' 내지 '(5)'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다)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라)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4)' 내지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8.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text{연간 주행거리} = \text{일평균 주행거리} \times \frac{365}{\text{(윤년일 경우 366)}} + \text{추가 운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경과주행거리 ÷ 경과일수

(1) '경과 주행거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에 운행정보확인장치에 기록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2) '경과일수'는 최초 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일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단, 최초 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일이 보험시기 이전인 경우에는 보험시기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3) '추가운행거리'는 다음의 사유로 운행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1시간당 60km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합니다. 단, 1일 추가운행거리는 500km를 한도로 합니다.

(가)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

(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의 사유

9. 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약정요일 비운행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정산금액
비운행 약정요일 준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별표2>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정산금액
3,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3,000Km초과 ~ 5,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 1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0,000Km초과 ~ 12,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2,000Km초과 ~ 17,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 2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20,000Km초과	0%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7) 주행거리 연동 할인 I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기간 동안 <별표>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나)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은 「7-5)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Ⅰ」, 「7-6)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Ⅱ」과 함께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2개월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화질불량이나 흔들림 없이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상 총누적주행거리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2) 사진의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와 함께 촬영되어야 합니다.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 전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보험기간 해지일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을 교체(수리)할 경우에는 교체(수리) 이전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수리) 전 계기판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하며, 계기판을 교체(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수리) 후 주행거리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주행거리 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및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확인받은) 경우 및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여 송부한(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3)' 및 '(4)'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확인받아야) 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에 전송하지(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료의 정산 등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특약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확인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 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가)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별표>의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정보를 확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나)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이 특별약관 '2.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의무' '(1)'에서 규정한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에서 규정한 정보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3.의'(1)'에서 규정한 확인 기일을 초과하여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확인 받아 이 특별약관의 약정사항의 준수를 증명한 경우에는 위'(1)'에 의해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3) 이 특별약관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및 '(2)'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365(윤년일 경우 366)

(1) 일평균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일수
(2) 경과일수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일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정산금액
3,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3,000Km초과 ~ 5,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 1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0,000Km초과 ~ 12,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2,000Km초과 ~ 17,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 2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20,000Km초과	0%

보험회사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8) 주행거리 연동 할인Ⅱ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기간 동안 <별표>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나) 보험기간이 1년이며(동일증권 계약으로 가입하기 위해 단기계약으로 가입한 경우 제외) 보험기간 첫날부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이 특별약관은 「7-5)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Ⅰ」, 「7-6)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Ⅱ」과 함께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2개월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34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화질불량이나 흔들림 없이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상 총누적주행거리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2) 사진의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와 함께 촬영되어야 합니다.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 전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보험기간 해지일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을 교체(수리)할 경우에는 교체(수리) 이전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수리) 전 계기판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하며, 계기판을 교체(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수리) 후 주행거리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정보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및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확인받은) 경우 및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여 송부한(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3)' 및 '(4)'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확인받아야) 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에 전송하지(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료의 정산 등
(1) 특약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와 보험가입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가) 특약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가입시 약정

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정산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나) 특약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가입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를 통하여 정산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2) 이 특별약관 '2.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의무' '(1)'에서 규정한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에서 규정한 정보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다만, '3.의'(2)'에서 규정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아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받아 이 특별약관 약정사항의 준수를 증명한 경우 위 '(1)'에 의해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3) 이 특별약관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및 '(2)'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4)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6.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365(윤년일 경우 366)

(1) 일평균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일수
(2) 경과일수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일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정산금액
3,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3,000Km초과 ~ 5,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 1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0,000Km초과 ~ 12,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2,000Km초과 ~ 17,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 20,000Km이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20,000Km초과	0%

보험회사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9) 지정대리 청구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 이하 같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아래 '(3)' 내지 '(4)'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4) 위 '(1)'에도 불구하고 '(3)'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 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②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④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⑤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3)'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그 밖에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2) 위 '(1)'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0) 블랙박스 장치 특별약관

1. 적용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 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치)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4. 계약의 취소', '5.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② 보험회사가 블랙박스 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2. 계약 전 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블랙박스 장치의 제조사, 모델명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2.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 '(1)'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의 취소
(1) 보험회사는 '1. 적용대상 (2)'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10 7-11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무효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1)'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1) 자녀(만7세이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보험책임개시일 기준 만 7세 이하이거나 출생전 자녀(이하 '태아'라 함)인 경우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가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태아의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단,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계약을 통해 '1. 가입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색 인

ㄱ 가족 ····· 38 53 82 84 86 115 137
고의 ····· 25 26 28 29 30 38 44 45 96
급여소득자 ····· 47 49 55
가지급금 ····· 21 35 36 37 38
과실 ····· 23 28 44 45 52 61 62 95 102

ㄷ 다른 자동차 ····· 30 31 42 57 84 86 99 100 101 102 109 112 123 125 129 132 135
단기요율 ····· 45 87 110 121
대여자동차 ····· 57 58 104 105 108 109

ㄹ 라이프니츠 ····· 47 51 55

ㅁ 마약 또는 약물 ····· 21 32 38
무면허운전 ····· 21 26 27 31 38 89 91 92

ㅂ 보험가액 ····· 30 31 32 33 102 103 105 106 108
보험가입금액 ····· 24 26 27 28 29 32 46 47 52 54 60 88 92 94 95 102 103 104 106 108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21 31 103
비용 ····· 21 25 26 27 29 31 32 36 46 50 54 56 85 86 87 88 91 94 99 100 101 102 103 104 105 113 114 115 116 118 119
배상의무자 ····· 27 28 29 33 43 91 101

ㅅ 상해등급 ····· 27 56 68 94
실제 손해액 ····· 27 91

ㅇ 음주운전 ····· 22 26 30 36 84 85 87
의무보험 ····· 22 23 37 38 39 41 42 43 82 120 122 124 125 127 129 130
이자 ····· 32 34 36 43 46 50 85 86 88 93 123 127 130 132

ㅈ 자기부담금 ····· 31 44 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2 23 24 25 26 35 41 50 51 56 59 69 77 78 80 81 83 89 94
정부보장사업 ····· 23 27 29 91
자동차취급업자 ····· 77 78 79 81 88 89 119 120

ㅊ 친족 ····· 22 24 31

ㅎ 후유장애 ····· 27 28 49 51 52 53 57 69 89 91
휴일 ····· 92 121 124
형제자매 ····· 45 133
해지 ····· 39 40 41 42 43 106 107 109 117 120 121 121 122 124 125 128 129 130 131
해제 ····· 41 42 43

MEMO

MEMO

MEMO

MEMO